

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공무원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경우 현금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금 횡령·유용 등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의 판매위탁을 추진함
- 2000년 1.22일자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동 조례 제8조의2(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위탁)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추진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가.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 위탁

나.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○ 위탁신청기관

-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

- 파주시시설관리공단

다.위탁방법은 협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동 민간위탁동의안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파주시

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

제8조(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)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1.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·면·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
- 2.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
- 3.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자

나. 내용타당성

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판매대금과 관련하여 각종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.

공무원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취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의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판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경향신문 보도(1999.5.3)

경기도는 지난 3~4월 일선 시·군의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금횡령 등 12건의 비리를 적발해 담당자 12명을 징계하고, 관련자 148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.

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 신천동의 경우 쓰레기봉투 담당자가 96년 8월~97년10월 사이 11차례에 걸쳐 모두 1천677만2천원의 쓰레기봉투대금 영수증을 이중 복사해 이 가운데 600만원을 횡령했다.

김포시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관련 지식이 없는 환경미화원에 맡겨 봉투 대금 2천45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7개 시·군은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과 봉투 소요량에 대한 분석 없이 봉투를 제작, 많은 재고량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이밖에 대부분의 시·군들도 ▲대장상 잔고량과 실제 잔고량 차이 ▲판매대금의 공무원 개인통장 보관 ▲봉투 무상지급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봉투를 주지않은 경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.